

소 장

원 고 1. 고**
주소

2. 김**
주소

3. 김**
주소

4. 김**
주소

5. 김**
주소

6. 정**
주소

7. 천**
주소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및 피고의 관계

원고들은 1994. 9. 10.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비영리공익법인 ‘참여연대’ 소속 간사들이고, 피고는 법인격이 부여된 국가로서 원고들의 1인 시위를 봉쇄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유**, 승**, 이** 경위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하 ‘이 사건 경찰관들’이라 합니다)을 공무원으로서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 청와대 앞 1인 시위의 봉쇄

가. 사실관계의 요지

2016년 10월 경부터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시민들 사이에 대통령이 2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차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사과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11월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22일에 걸쳐 청와대와 가장 근접한 청와대 정문 맞은편 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서울 종로구 효자동 139)에서 ‘꼭두박씨

하야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실행 및 촬영하기 위해 참여 연대 사무소에서 신교동 교차로를 거쳐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202경비단 유** 경위 등 경호담당 경찰관들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효자로 남단 인도에서 원고들의 통행을 막은 채 통행의 이유를 물었고,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답하자 “피켓 구호에 ‘하야’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3항 상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의 1인 시위를 봉쇄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봉쇄행위’라 합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이 계획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위법하게 봉쇄하고 통행을 차단하여 원고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피고의 개별 봉쇄행위의 경위를 설명드리고, 이어 피고의 봉쇄행위가 왜 위법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개별 봉쇄행위의 경위

아래 [표 1]는 시간순서에 따라 각 원고별로 피고의 봉쇄행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장 : [표 1])

시간 / 장소	원고	봉쇄행위의 경위
2016. 11. 4.(금) 12:00 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원고 3. 김**	2016.11.4.(금) 12: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길을 통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p>터 맞은편 인도</p>		<p>(분수대 광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효자로 길목에서 경호를 하던 경찰관은 통행의 이유를 물었고, 원고 3. 김**은 '1인 시위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은 '하야'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이내 'V.I.P 하야 피켓'을 무전 보고 한 후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통행을 막았습니다.</p> <p>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유** 경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 의해 분수대 광장이 경호 구역이며,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로 진입을 차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김**은 '1인 시위가 어떻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물었고, '위해를 가하면 법에 따라 체포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유 경위는 위의 조항만 반복 대답하였습니다.</p> <p>경찰과 대치하던 중 원고 김**은 이미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을 발견하였고 왜 1인 시위자를 검열/선별하는지 문의했지만,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김**과 함께 동행한 원고 4. 김**가 '피켓 없이'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세고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피켓이 없는 상태의 통행마저 가로 막았습니다.</p>
	<p>원고 4. 김**</p>	<p>2016.11.4.(금) 정오 12시경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려는 원고 3. 김**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함께 이동 중 경찰에게 통행을 가로막혔습니다. 원고 김**은 당시 '꼭두박시 하야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지나가려는 상황이었고 이후의 상황은 원고 김**이 상술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30분간 항의를 이어가다가 피켓을 든 원고 김**은 그 자리에 있고 원고 4. 김**만 다른 문구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통행을 하겠다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이 장소에 왔기 때문에 피켓을 들지 않았더라도 통행을 할 수 없다며 막아섰습니다. 원고 김**는 자신이 1인 시위를 진행할 목적이 아니었고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온 것이며 도대체 어떤 문구의 피켓만 통과가 가능한지 다른 사람들이 분수대 앞 1인 시위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한다고 항변하였지만 경호상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하니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경호 책임자 소속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유**, 승** 경위입니다.</p>
<p>2016. 11. 7. (월) 오후 12:05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인도</p>	<p>원고 2. 김**</p>	<p>2016.11.7.(월) 오후 12시 5분경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꼭두박시 하야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효자로로 지나가려던 중 경찰이 저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경찰에게 '왜 막느냐, 나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 하러 왔다,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항의하니, 청와대 분수대 앞이 1인 시위가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5조 3항을 근거로 들</p>

		었습니다. 저는 해당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자, 여기서 따지기 싫으니 그냥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경호 책임자 소속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유**, 승** 경위입니다.
2016. 11. 8. (화) 오후 12시경(정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인도	원고 7. 천**	2016.11.8.(화) 오후 12시경, <꼭두박씨 하야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가는 도중,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이** 경위와 다수의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5조 3항을 내세우며 들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1인 시위를 하려는 '해당 장소는 이미 여러 건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어 저만 막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이** 경위는 피켓의 내용이 문제라며 추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세월호 유족(416연대), 공무원노조해고자 원직복직요구(공무원노조), 파룬궁 외 2건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6. 11. 10. (목) 오후 12시경(정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인도	원고 6. 정**	2016.11.10.(목) 정오 12시 즈음 <꼭두박씨 하야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경비단 소속 경찰 등이 이동을 막아서고 이동의 목적과 방향을 물었습니다. 해당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려한다고 하자, 경찰은 이동할 수 없다면서 12시 45분 경까지 계속 이동을 막아셨습니다. 결국 12시 45분경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2016. 11. 11. (금) 오후 12시경(정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인도	원고 5. 김**	2016.11.11.(금) 정오 12시 즈음, "국민들은 분노폭발 박근혜 물러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향하던 중 경찰이 통행을 가로 막았습니다. 경찰은 '내용이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김**은 아무런 흉기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차에 뛰어들거나 소리를 질러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한다고 반복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2016. 11. 22. (화) 오후 12시경(정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인도	원고 1. 고**	2016.11.22.(화) 정오 12시 경, 고양이가 '하야옹!' 울고 있는 그림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을 향해 걸어가던 중,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지나자마자 유** 경위를 비롯한 7-8명의 경찰들이 저를 막아셨습니다. 경찰관들은 고양이가 '하야옹!' 울고 있는 그림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므로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그림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해석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불법 채증을 했으며, 그림을 놓고 지나가겠다고 하였지만 이유 고지 없이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경찰관들은 원고들이 소지한 피켓에 ‘하야’ 또는 ‘하야옹’ 등 대통령의 퇴진을 적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

유만으로, 원고들이 목적인 1인 시위 장소인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으로부터 약 200여 미터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효자로 인도상에서부터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경찰관들은 원고들이 단순 사진촬영용 동행자일 경우도 통행을 위법하게 차단했으며, 피켓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까지 가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통행을 위법하게 차단하였습니다.

3.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행위의 위법성

가. 관련 법령

경찰은 원고 4. 김**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소지한 피켓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1인 시위 또는 1인 시위자가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 상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인 시위는 물론 피켓 없는 원고들의 통행까지 봉쇄하였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든 「대통령경호법」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2013.3.23.>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실장은 경호업무를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3.3.23.>

[전문개정 2011.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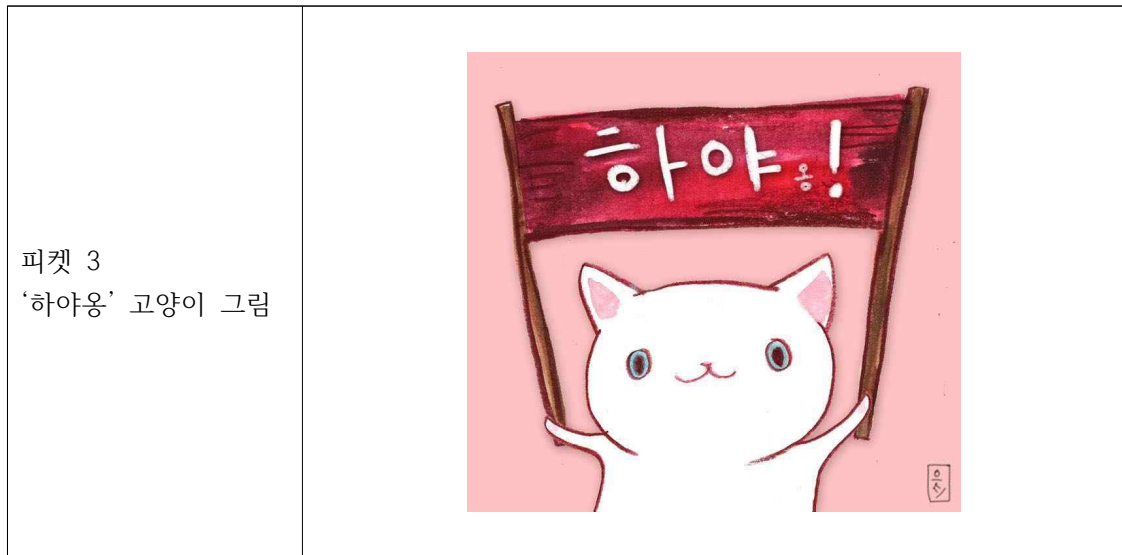
이상의 조문에 따르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관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즉 제한적으로 질서유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

또한 여기서 ‘경호 목적’이라 함은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정의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과연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성격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나. 1인 시위의 대통령경호법 위반여부

이 사건 원고들이 준비한 피켓은 세 종류로, ① ‘꼭두박씨 하야하라’ 라는 글씨와 주먹 그림이 그려진 60×90cm 크기의 폼보드(스티로폼 계열제품)로 채질 직사각형 피켓 한 개와, ② ‘국민들은 분노폭발 박근혜는 물러나라’ 고 적힌 60×90cm 크기의 폼보드 채질 직사각형 피켓 한 개, ③ ‘하야옹’ 이라고 그려진 고양이 그림의 A3 용지 크기 종이피켓 한 개입니다. 그 외 원고 4. 김**는 피켓 없이 카메라만 준비하였습니다.

피켓 번호	피켓 사진
<p>피켓 1 ‘꼭두박씨 하야하라’</p>	
<p>피켓 2 ‘국민들은 분노폭발 박근혜는 물러나라’</p>	



위와 같은 피켓들은 단순히 손으로 들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으로, 재질 및 1인 시위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피켓으로 경호대상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경호목적을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호질서를 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위원고들이 피켓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오직 1인 시위를 하기 위한 목적 외의 수단으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 사건경찰관들은 피켓의 ‘하야’ 또는 ‘하야옹’ 등의 대통령 퇴진을 암시하는 문구를 문제 삼았는데, 이러한 문구는 피켓을 통해 단순한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경호 대상인 대통령 등에 대해 어떠한 신체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봉쇄행위에서 경찰관들이 피켓의 내용을 문제삼으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의 통행을 차단한 것은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을 오해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법 조문의 부당한 해석에서 비롯된 위법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2. 4. 25.자 2001헌가27 결정). 그러므로 원고들이 실행하려 하였던 이 사건 1인 시위 또한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됩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와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0헌마764 결정).

그런데 전술하였다시피 원고들이 준비한 피켓 또는 피켓의 내용은 대통령경호법의 근거 조문에 의해 규제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봉쇄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피켓을 통한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한 것에 반해 원고들의 피켓 내용을 봉쇄 이유로 들었으므로 위법한 사전검열에 다름아닙니다.

라. 이 사건 봉쇄행위의 고의성

만약 피켓 내용이 아닌 1인 시위 자체가 경호 대상에 위해를 가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면 모든 1인 시위를 봉쇄하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찰관들은 1인 시위의 성격 및 피켓의 내용을 기준으로 통행 및 1인 시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봉쇄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1) 사건 당시 타 주제의 1인 시위는 자유롭게 허용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파룬궁 탄압 철폐,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가 각각 진행중이었습니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참조).

또한 원고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한 기간 중인 2016. 11. 18.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주민이 2016. 11. 16. 세월호 유족들의 소위 ‘세월호 침몰 7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봉쇄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갑 제17호증, 2016. 11. 18. 박주민 의원 1인시위 동영상)

나아가 2016. 11. 18. 당일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취지의 1인 시

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별한 제한 없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갑 제17호증, 동영상, 00:54" ~ 00:58")

2)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은 자유롭게 허용되었습니다.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들과 동일하게 하야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 표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의 기자회견일 경우에는 특별히 제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6. 11. 6. 14시 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 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갑 제18호증, 기사), 동년 11월 7일에는 정의당 소속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당직자 등이 ‘하야’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한’ 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까지 행진한 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갑 제19호증, 동영상).

결국 이 사건 경찰관들은 원고들과 동일한 주장을 국회의원 및 정당인들이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은바, 이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하야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등 의견표출행위가 어떠한 식으로도 경호업무를 저해하거나 위협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1인 시위를 봉쇄한 것은 위법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경찰관들은 피켓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내용을 인식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찰관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봉쇄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상

부에 ‘VIP 하야 피켓’ 이라고 무전 보고를 하고(2016. 11. 4.),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대응한 경우도 있습니다(2016. 11. 7.).

결국 이 사건 봉쇄행위를 감행한 경찰관들 또한 피켓 자체는 경호 대상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야’ 등 퇴진 관련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1인 시위를 봉쇄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관들의 1인 시위 봉쇄 행위는 단지 ‘하야’ 를 주장하는 내용 때문이고 다른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경호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손해의 산정

소위 ‘1인 시위’ 는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그 행위 양태 또한 지극히 평화로운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찰관들은 원고들이 1인 시위의 취지와 장소를 반복적으로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력(警力)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막는 방식으로 1인 시위 및 자유로운 통행을 봉쇄하였고, 그러한 봉쇄행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성 및 고의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경찰관들은 원고들이 2016. 11. 4일, 7일, 8일, 10일, 11일, 22일에 걸쳐 1인 시위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봉쇄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다만 지속·반복적으로 봉쇄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피고의 지위를 고려하면 지극히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가 너무도 만연히 반복된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1인 시위를 각 진행하면서 피고의 지위 및 성질,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양태, 명백한 위법성 및 고의성 등 요인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였으므로, 그 배상액수를 각 오백만원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어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인적·물리적 집단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봉쇄행위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2016. 11. 4. (금) 현장 녹음
1. [갑 제2호증] 2016. 11. 4. (금) 현장 동영상 (1)
1. [갑 제3호증] 2016. 11. 4. (금) 현장 동영상 (2)
1. [갑 제4호증] 2016. 11. 8. (화) 현장 사진
1. [갑 제5호증] 2016. 11. 9. (수) 현장 동영상
1. [갑 제6호증] 2016. 11. 9. (수) 청와대 앞 다른 1인시위자 사진 (1)

1. [갑 제7호증] 2016. 11. 9. (수) 청와대 앞 다른 1인시위자 사진 (2)
1. [갑 제8호증] 2016. 11. 9. (수) 청와대 앞 다른 1인시위자 사진 (3)
1. [갑 제9호증] 2016. 11. 10. (목) 현장 사진
1. [갑 제10호증] 2016. 11. 11. (금) 현장 사진
1. [갑 제11호증] 2016. 11. 11. (금) 현장 동영상 (1)
1. [갑 제12호증] 2016. 11. 11. (금) 현장 동영상 (2)
1. [갑 제13호증] 2016. 11. 22. (화) 현장 사진 (1)
1. [갑 제14호증] 2016. 11. 22. (화) 현장 사진 (2)
1. [갑 제15호증] 2016. 11. 22. (화) 현장 동영상 (1)
1. [갑 제16호증] 2016. 11. 22. (화) 현장 동영상 (2)
1. [갑 제17호증] 2016. 11. 18. (금) 박주민 의원 1인시위 동영상
1. [갑 제18호증] 2016. 11. 6. (일)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기사
1. [갑 제19호증] 2016. 11. 7. (월) 정의당 기자회견 동영상

2016. 11. 29.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귀중